

# 회 원 규 정

**제1조(회원의 자격)**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민간 경제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2조(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3조(회원의 혜택)** 회원은 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 관련 교육.연수 및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상담.법률자문 및 조사.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종류)**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① 기업회원은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 ② 단체회원은 업종별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경제단체와 법률·회계 등을 제공하는 법인 및 이와 유사한 사무소를 말한다. (예시 : 법무법인,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 ③ 일반회원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써 교수, 학생, 개인변호사와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제5조(회비 산출 기준)** ①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회비산출의 기준은 회원의 종류별로 따로 정하며 단체회원 및 일반회원은 정액으로, 기업회원은 직전전년도의 매출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매출액 조사에 따른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의한 대상 업체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등 매출액에 준하는 조사 자료에 의한다.

③ 전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신설업체 등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분 류	연회비 산출기준		
	가입 초년도	가입 1년차	가입 2년차
금년도 신설 법인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1월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전년도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전전년도 매출액

분 류	연회비 산출기준		
	가입 초년도	가입 1년차	가입 2년차
신설 법인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1월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전전년도 신설법인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1월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전전년도 매출액	전전년도 매출액

④ 회원이 기업분할로 인해 2개 이상의 기업으로 나뉘게 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1개 기업 이외의 기업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회비 산출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구 분		분할 년도	분할 1년차	분할 2년차
기존회원 자격승계	분할 법인	전전년도 매출액	전전년도 매출액	전전년도 매출액
	신설 법인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매출액 구분이 확실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매출액 구분이 확실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1월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신규회원 가입	분할 법인	전전년도 매출액	전전년도 매출액	전전년도 매출액
	신설 법인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매출액 구분이 확실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매출액 구분이 확실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 (※전전년도 1월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매출액으로 산출.)

⑤ 연회비를 미납한 둘 이상의 회원 간 기업결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회원의 전전년도 매출액과 피합병 회원의 전전년도 매출액을 합산하여 연회비를 산출하여 부과한다.<2016.1.29. 개정>

⑥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한 회원 둘 이상이 기업결합(합병)을 하는 당해연도와 익년도에는 합병 회원의 전전년도 매출액과 피합병 회원의 전전년도 매출액을 합산 후 연회비를 산출하여 부과하고 합병 3년차부터는 제6조 제1항에 의한다.<2016.1.29. 신설>

※ 합병회원의 전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70%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한다.

**제6조(회비 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직전전년도 매출액	년회비
기업회원	50조 이상	1천3백만원
	30조 이상 50조 미만	1천만원
	15조 이상 30조 미만	7백만원
	2조원 이상 15조 미만	5백만원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3백만원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2백만원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3백억원 미만	1백만원 5십만원
단체회원	경제단체	5백만원
	업종별 단체 및 법무법인	1백만원
일반회원	개인 변호사, 교수, 학생 등	2십만원

② 이사 회원인 4대 그룹사의 회비금액은 제1항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사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별표1)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2016.1.29. 개정>

③ 전1항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 이외에 연합회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7조(회비 부과)**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회비는 정기 회원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부과하며, 회원은 회비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6.1.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회비의 부과는 납부 기일 및 계좌번호, 예금주를 명기하여 해당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입회한 회원의 회비는 입회년도에 제6조(회비금액) 제1항의 연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부과하거나 총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신규회원의 원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익년도 연회비의 부과 및 납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2016.1.29.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연회비의 월할 계산은 연회비의 12분의 1을 가입일의 월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십만 원 미만의 금액은 사사오입한다.

⑤ 회비납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 년도에 납부할 회비금액을 매년 11월 1일자로 고지한다.

**제8조(납부 확인)** 회원으로부터 연회비 납부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회비 부과

및 수납 대장 대조 확인 절차 후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교부하여야 한다. <2016.1.29. 개정>

**제9조(자격상실)** 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2016.1.29. 신설>

② 전항에 의거 자격이 정지되는 회원에게는 문서로 자격정지 예정임을 통지하여야 한다.<2016.1.29. 신설>

③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상실한다.<2016.1.29. 신설>

④ 회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를 제출 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2016.1.29. 항변변경>

⑤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비의 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2년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장이 제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6.1.29. 개정>

**제10조(재가입)**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때 연회비 이외에 다음에 의한 가입비를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한다.

최초 재가입시		2차 재가입시	
최종 탈퇴 사유	가입비	최종 탈퇴 사유	가입비
탈 퇴	연회비의 100%	탈 퇴	연회비의 170%
제 명	연회비의 120%	제 명	연회비의 190%

※ 동일 회계연도(정부기준)에 재가입을 할 경우엔 가입비를 면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 중 회장이 연회비 및 회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원규정 제7조제1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사 회원인 4대 그룹사의 회비 부과 기준<2016.1.29. 개정>

이사 회원인 4대 그룹 소속 회원사의 경우 개별 회원사별로 년 회비를 산출하여 부과함. 다만 소속그룹은 그 회원사들에 부과된 회비의 총액을 회원사별로 재배분하여 납부할 수 있음.(그룹별 회비 부담액은 그룹차원이 아닌 개별회사별로 회원으로 가입한 그룹소속 회원사는 제외함.)

<별표2> 기존 회원의 회비 납부 기한 조정<2016.1.29. 폐지>